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생물자원관에 생물소재 관리 및 이용기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 화학물질안전원에 화학물질 정밀검사 및 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 전문훈련장 시설 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관 1명), 기록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0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정원 47명(5급 1명, 6급 12명, 7급 17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6명)의 평가기간을 1년 연장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정책홍보팀과 환경교육팀의 존속기한을 각각 2022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유역환경청 공무원 정원 4명(9급 4명), 지방환경청 공무원 정원 3명(9급 3명) 및 수도권대기환경청 공무원 정원 1명(9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2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7의3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118”을 각각 “119”로 하고, 4급 이하 “115”를 “116”으로 한다.

별표 17의4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100”을 각각 “103”으로 하고, 4급 이하 “67”을 “70”으로 한다.

별표 18 제2호를 아래와 같이 한다.

2. 환경부 소속기관

평가대상 정원

업 무	정 원	평가기간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유역 · 지방환경청)	47명 (5급 1명, 6급 12명, 7급 17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6명)	2023년 12월 31일까지

환경부령 제738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환경부령 제807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환경부령 제738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환경부령 제738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간)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12의 정원 4명(행정서기보 · 통계서기보 · 환경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4명), 별표 14의 정원 3명(행정서기보 · 통계서기보 · 환경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3명) 및 별표 16의 정원 1명(행정서기보 · 통계서기보 · 환경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1명)은 <u>2022년 12월 31일까지</u> 존속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간) ----- ----- ----- ----- ----- ----- ----- ----- ----- ----- ----- <u>2024년 12월 31일</u> -----.
환경부령 제807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환경부령 제807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종전의 환경부령 제746호 환경부와 그 소속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 -----

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설된 기구(정책홍보팀, 시민소통팀 및 환경교육팀) 중 이 규칙 시 행으로 폐지되는 시민소통팀을 제외한 정책홍보팀 및 환경교육 팀은 각각 <u>2022년 12월 31일</u>까 지 존속한다. ② 삭 제 ③ (생 략)	----- ----- ----- ----- ----- ----- ----- <u>2024년 12월 31일</u> ----- -----. ③ (현행과 같음)
--	--

신 · 구 정원 대비 표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7의3]

국립생물자원관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1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		<u>118</u>	.	<u>119</u>	+1	
일반직	계		<u>118</u>	.	<u>119</u>	+1	
	.		.	.	.		
	.		.	.	.		
4급	이하		<u>115</u>	.	<u>116</u>	+1	

[별표 17의4]

화학물질안전원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12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100	103	+3
일반직 계	100	103	+3
4급 이하	67	70	+3